

언론중재법 시행에 부쳐

언론중재위원회에 바란다



새로운 언론중재법에 거는 기대

함 종 옥

언론중재위원회와 인연을 맺은 것은 작년 여름 필자가 고주파로 사각턱을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 개발해 이미 언론에 기사화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사에서 다른 의사가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기사가 게재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기사를 쓰신 기자분이 조금만 확인을 했어도 발생하지 않을 사건이었는데, 아마도 개인적인 친분과 믿음 때문에 사실 확인 없이 기사화했던 것 같았다. 처음에 기사를 접하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하다가 친분이 있는 기자한테 상의를 했더니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라는 조언을 받았다. 번거로움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 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 기사라는 것이 잘못된 내용이라도 일단 알려지면 독자는 절대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 한 줄 분량의 정정보도는 찾아서 읽어보기도 어렵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정정보도 보다는 양측을 원만하게 타협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서 적절한 분량의 기사를 실어주

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참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판결이 난 후에도 방치되지 않고 중재위원회 직원이 친절하게 경과과정을 일일이 확인해 준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고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조정 결정의 일부만이 이행이 되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상황을 종결해야만 했다는 점이다. 법적인 강제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인의 편의와 피해구제 측면에서 많이 보강된 것 같다. 구술로도 중재신청을 할 수 있어 편리하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였던 청구기한이 3개월로 연장되어 신청인의 권리보호가 더욱 두터워졌다. 인터넷언론의 보도 비중이 커져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중재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인터넷신문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고도 중재 청구를 할 수 없어 난감한 사례가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청인이 언론보도로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에 관해서도 다루는 원 스톱 서비스 개념의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시행

되면 많은 언론 피해 당사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부작용으로는 문턱이 낮아진 만큼 무분별한 중재신청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는 중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기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관공서의 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일원화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의 원 스톱 구제절차가 잘 시행된다면 이것을 모델로 우리사회가 합리적인 발전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언론보도 피해자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언론중재위원회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피신청인

‘기자들의 무덤’ 되지 않길...

이 화 섭
KBS 시사보도팀장

7월부터 시행되는 새 언론중재법이 ‘태풍의 핵’이 되고 있다. 이제 기자들이 누리던 태평성대는 끝이 났다는 예감이 든다. 새 언론중재법은 언론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과 위상도 크게 높여 두고 있다. 언론은 이제 스스로 권력이 된 ‘절대 강자의 입장’을 벗어 던지고 국가법익과 사회법익, 개인법익을 세심하게 배려해야 살아남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한국언론은 ‘사회적 책임’보다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는 보호막 아래 안주해 왔다. 말하자면 기사의 공익성에 비춰 면책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판단에 길들여져 온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언론중재법은 ‘함부로 기사쓰기’에 쐐기를 박고 있다. 더구나 언론중재위원회는 이제 결정을 내린 뒤 사후 관리는 하지 않았던 있으나마나한 기관이 아니다. 조정 기능에다 판결의 효력을 갖는 중재 기능이 생겼고 중재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졌다. 조정결정 이후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손해배상청구, 당사자 아

닌 제3자의 시정권고 신청이 가능하고 인터넷 신문도 언론중재 대상이 됐다. 이쯤 되면 언론중재법은 ‘기자들의 무덤’이 될 수도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리처럼 통합된 언론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둔 나라는 없다는 말도 들린다.

지금까지도 언론중재위원회는 ‘힘은 없었지만’ 기자들과 멀면 멀수록 좋았고, 들락거리고 싶지 않은 기관이었다. 쟁송은 기자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지만 능력 있는 기자 치고 쟁송을 한 두건씩 달고 다니지 않는 기자가 드문 게 현실이다. 그만큼 ‘완벽한 글쓰기’가 힘들다는 얘기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는 기자들, 기자들을 대신해 출석하는 데스크들은 피곤해도 한참 피곤하게 생겼다. 이제는 예전의 언론중재위원회에 가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나 특허법원, 행정법원에 가는 정도로 각오를 다져야 할 것 같다. 실제로 새 언론중재법은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기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글쓰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 언론관련 법안이 개혁입법으로 국회를 통과할 당

시 신문법에만 관심을 쏟았지 언론중재법을 주목한 언론인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정도로 언론계가 술렁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언론중재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상황 가운데 일부만 살펴보자. 우선 기자들은 기사를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웬만하면 봐주던 공인에 대한 기사도 새로운 언론중재법으로는 쉽게 넘어갈 수가 없게 됐다. 나아가 시민단체나 정당까지 나서서 기사에 시비를 걸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언론사의 논조와 관련해 보수 진보 양쪽 시민단체에서 시정권고를 요구할 수 있다. 결국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건수가 크게 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발할 것이다.

작은 언론의 부담이 지금보다 현저하게 커질 것이다. 작은 언론의 데스크 기능은 큰 언론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로 재송에 걸려들 위험부담을 높일 수밖에 없다. 적은 인력으로 속보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인터넷 매체가 바로 그 경우에 해당된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일선기자가 쓴 기사는 취재부서의 2단계의 데스크 과정과 편집부와 영상 출고 부서의 게이터 키핑 과정을 또 거친다. 초벌구이가 아니라 세벌구이 네벌구이를 한 상품을 내놓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이 그 정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그 점에서 인터넷

매체는 '좋은 시절' 대신 이제는 '시련의 세월'과 맞닥뜨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 매체의 시민기자들은 사실에 바탕을 둔 객관보도와 논평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 같다.

물론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언론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언론 수용자의 권익을 크게 신장시키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자율의 영역에 남겨 둘 '사회적 책임'까지 범으로 구속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 같다.

새로운 언론중재법은 범조계와 시민단체, 정치권의 오랜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언론이 스스로 권력이 되어 강자로 군림해온 데 대한 견제장치가 비로소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언론중재위원회가 스스로 권력기관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방송이나 신문이나 급변하는 언론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곧 언론중재법 시행령도 만들어진다니 이 법을 운용하면서 실효성과 함께 법적 안정성을 지켜내길 기대해 본다. 다만 언론의 보도내용을 제소하기만 하면 단돈 만 원이라도 받아낼 수 있는 먹잇감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기자들의 무덤'이 되고 만다면 한국 언론엔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테니까 말이다. □

언론단체

다시 태어난 언론중재위의 갈 길

김 영 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지도 벌써 25년째를 맞는다. 하지만 그 동안 언론중재위원회는 설립근

거인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갇혀 그 역할과 기능이 제한적이었다. 지난 10년 가까이

언론운동진영이 개혁 차원에서 언론법 개정운동을 펴왔다. 그런데 새해 벽두에 어두침침하지만 그 빛을 보게 되었다. 물론 그 내용은 운동진영이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그러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어 다행이라고 하겠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독립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한국언론은 언론자유는 아나 사회적 책임을 모른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당파성이 강해 선거 때만 되면 특정한 정치집단을 두둔하는 편파-왜곡 보도를 서슴지 않는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특정인을 노골적으로 지지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네 차례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그 같은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언론의 '대통령 만들기'라는 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오죽하면 선거법에 선거기사 심의규정을 두어 공정성을 따지도록 했을까?

어떤 형태이든지 선거기사심의는 정부개입이라는 점에서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또 사회가 용인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의 불공정정보도가 성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정치사안에 관한 불공정정보도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한국언론은 언론행위를 통한 정치활동을 예사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언론의 권력화 현상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언론이 권력과 결탁하여 합법성-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의 영속화에 기여했다. 그 대가로 언론은 정치권력에 못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향유해왔다. 그 탓에 편파-왜곡-허위보도에 따른 피해구제를 호소해도 좀처럼 들어주지

않는다. 정당한 반론권에도 무응답으로 나간다. 최근 들어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용자의 주권의식이 고양되고 있다. 그런데 언론중재건수는 오히려 늘어나니 언론매체들이 환경변화를 감지나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새로운 피해구제법에서는 언론중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했다. 먼저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확대되었다. 조정 이외에도 중재권한이 부여된 것이다. 또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이외에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조정이나 중재가 가능하도록 되었다. 시정권고권한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무엇보다도 구술신청이 도입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구제를 신청하기 훨씬 수월해졌다.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도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구제법이 제정되기까지 남다른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보다는 시민사회의 노력에 힘입은 바 더 크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참여단체인 언론인권센터가 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도 갖고 입법을 청원하여 얻어낸 결과물인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그 법안을 토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그것은 허위보도-왜곡보도로 입은 일반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는 입법 취지에 따라 언론보도에 따른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마침 지난 3월 31일 언론중재위원회는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새로 구성하고 다수의 시정권고위원들을 새로 선출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은 격이다. 새로 태어난 언론중재위원회는 거듭 나서 인권보호에 더 충실하기를 기대한다. 언론피해구제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보도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가 나갈 길이다. □

‘신속’과 ‘균형’의 두 기둥으로 거듭나기를

윤재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나에게 언론중재위원회는 제2의 고향과 같은 존재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2000년 9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중재부장으로 재임하여 최장수 중재부장이라는 영광을 얻었고 그 사이 중재위원님들과 중재위원회 직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즐거운 추억도 쌓았기 때문이다. 이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언론중재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언론분쟁의 주관기관으로 자리잡는 것을 보면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 오랜 숙원이던 신청기간 연장, 손해배상, 중재기능 도입 등 권한이 늘어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것 같다. 하지만 권한이 늘어난 만큼 그 책임과 도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중재경험에 비추어 예상되는 두 가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해보고자 한다.

첫째 언론분쟁의 핵심이라고 할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실질적으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종전에는 정정보도청구권은 명예를 해하는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구제방법의 하나로서 보도의 위법성과 귀책사유가 그 전제가 되었는데 신법에 의하면 이러한 요건이 불필요하게 되어 반론권의 하나로서 볼 여지가 높다. 이러한 입법이 과연 타당한지에 관한 논의는 차치하고라도(법조계에서 위헌론이 벌써 제기되고 있어서 일부 조항의 수정이 예상된다) 중재실무상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의 구별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청구인은 모두 보도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진실 여부를 다투지 않는 순수한 반론보도청구는 그 예가 거의 없을 것이다), 정정보도의 인용한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정보도형식을 청구인?언론사 중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 이 권리를 민법상 정정보도청구와 별개로 인정할 것인지(법 제31조에는 정정보도의 공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손해배상과 동시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정정보도청구는 위법성과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손해배상에 국한하여 귀책사유를 따지는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의 문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결국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행사방법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확정판결이 나와야 할 터인데 이런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독자적인 기준을 세워 새로 창안된 권리관계를 다룬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둘째 손해배상청구를 다루는 작업에는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원래 손해배상책임의 확정은 가해자의 귀책사유, 위법성, 인과관계 및 피해자의 구체적 손해, 과실상계 문제 등을 종합하여야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므로 비사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러한 작업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신법상 증거조사가 가능하지만, 그 신뢰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조정률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도 심리 경험이 없는 중재위원회에서는 돌출적인 기준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원과 중재위원회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액이 차이가 날 경우, 또는 중재부 상호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 쪽으로 손해배상을 포함한 언론분쟁사건이 몰릴 것이다. 자칫 언론중재위원회에 사건다운 사건은 제기 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대처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입장에서는 법적 기준, 심리방법, 문례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준비가 시급하다고 하겠다. 최종 법해석권을 가진 법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할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언론인을 상대로 한 세미나가 아니라 법조인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전문 세미나가 상당 기간 필요할지 모른다. ② 언론중재위원회의 기능은 장기적으로 볼 때 피해자 입장에서의 '접근 용이성'에 강점이 있다.

언론중재제도의 간편성과 신속성은 법원의 소송제도가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으로 가기 어려운 간단한 사건들의 심리방법을 계속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이러한 간편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결론이 한 쪽에 치우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아 이용률이 낮아질 것이다. 손해배상문제도 다루어지므로 그 배상액수가 법원과 불균형을 이루면 결국은 불복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결론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새로운 위상을 찾아가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집중할 덕목은 '신속한 심리'와 '균형 잡힌 결론'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신속과 균형이 유지될 때 언론중재위원회는 시민이 믿고 의지하는 든든한 기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언론단체

“우리는 한 줄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사흘 밤낮을 걸었다”

이 상 기
한국기자협회 회장

“우리는 한 줄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사흘 밤낮을 걸었다.” 2002년 11월 처음 열린 제1회 재외동포 기자대회에 참가한 <고려일보> 김성조 편집국장이 청와대 간담회에서 건배사를 대신해 한 이 말에 필자는 온 몸이 감전된 듯했다. 지금도 느낌은-아니 그 전율은-계속되고 있다.

기자생활 20년 가까이 하루에도 수없이 되뇌이는 '진실보도'를 경제후진국 카자흐스탄에서 온 고려일보 편집국장이 이 한 문장으로 압축시켜 정리하고 있다니!

여전히 대부분 기자들은 말이나 사건 혹은 자료의 진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온 몸과 혼을 쏟고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그것은 기자들만의 사명이자, 특권이며 보람이기 때문이다.

“팩트가 뭐야? 팩트를 찾으란 말이야! 기자가 팩트 말고 뭘로 말하냐? 팩트가 없으면 기사가 아냐, 그건 소설이란 말이야!” 수습시절부터 귀가 닳도록 듣는 이 말이 과연 오늘의 기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가 생각해 본다. 그러리라 철석같이 믿고 싶다. 믿고 싶은 단지 그뿐.

언론중재위원회는 기자들에게는 무서운 존재다. 그러나 한편으론 기자들의 오보를 막으며, 그들이 항상 진실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

필자도 2000년 가을 한겨레 수도권팀장 시절 일선 기자가 쓴 기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중재위에 제소돼 출석한 적이 있다. 반론보도문을 실어주기로 합의해 중재는 성립됐지만, 기자한테 진실보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

오는 7월 28일 새로운 언론중재법이 시행된다. 법을 곰곰이 뜯어보면 이전보다 진일보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1980년 언론중재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법률가, 언론인 및 실무자들이 갈망해온 '단일법 제정'이 비로소 이루어졌다. 특히 언론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권리구제의 폭을 대폭 넓힌 점은 시대정신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수용자 입장을 강화하려다 도리어 피해구제가 지연되거나 기자들의 보도행위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우선 '반론보도'의 경우 종래의 정간물법은 제19조 제1항에서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한 언론중재의 '필요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 법률에선 이를 삭제하고 반론보도의 경우 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게 했다. 종래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 중재위를 거치게 한 것은 중재부가 언론사 및 피해자 쌍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고, 중재부 절차가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되므로 신속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반론보도 청구사건은, 그 보도의 사실여부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심리가 비교적 간단하여, 구태여 법원의 상세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중재 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를 토대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

적 전치주의를 채택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새 법이 이를 삭제함으로써 언론사와 피해자간 사전조정을 회피해 피해구제가 지연될까 우려된다.

다음으로 새 법 제16조 제2항에서, 반론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기자가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이같은 보도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마도 입법자가 언론보도에서의 '사실'과 '진실'을 혼동해서 이런 조항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예를 들어 보자. "국회의원 A가 건설회사 사장 B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 그런데 A는 후원회 행사에서 B로부터 후원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게 진상이라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에, 만약 언론의 보도가 "A라는 국회의원이 B라는 건설회사 사장에게서 100만원을 받았다"고 보도되었다면, 일반독자는 국회의원이 회사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과 같은 인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실'에는 부합하지만 '진실'에는 부합하지 아니한 보도로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해, "A라는 국회의원이 B라는 건설회사 사장에게서 후원회비로 100만원을 받았다"라고 보도하였다면, 이는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에도 부합한다. 이 경우 반론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국회의원 A가 이러한 보도가 나가기를 설사 원치 않는다 해도 언론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법 제16조 제2항이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규정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만일 이런 식이라면 기자들이 쓸 수 있는 기사는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 재개정 때까지 재판부가 용어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자칫 법에 대한

오해를 불러와 입법 취지가 손상될까 두렵다. 2005년 이 시대, “기자로 산다는 것”의 무게는 천근만근이다. 언론중재법이 부디 기자들의 의욕을 꺾는 대신 진실

보도의 다짐과 의지를 북돋워주며 한편으로 국민들의 언론피해구제를 원활히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데 성공하기 바란다. □



내재적 한계와 운용의 묘를 기대하며

박 선 영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현대국가에 있어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에게는 주관적인 진실발견과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으로서, 국가와 사회에는 객관적인 민주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본질적인 제도라는 이중적 성격을 누리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느 기본권보다도 중요하고 우월적인 지위를 누린다. 그러나 이토록 중요한 개인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을 제정하겠다고 했을 때 정치·사회적으로 왜 그토록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을까? 여야합의로 입법은 되었지만 실행도 되기 전에 언론인과 정보수용자, 법률가 등은 왜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을까? 5월 31일 현재까지도 좁혀지지 않는 이견대립 등으로 인해 시행령은 왜 확정되지 못하고 있을까?

이 모든 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7월 28일부터 언론중재법은 시행될 예정이다.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겠다는 입법취지를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해서일까? 아니면 그 입법취지는 동떨어진 또 다른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앞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함)가 이 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 언론중재법이 ‘국민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자유와 권리를 공고히 해 줄 것인가의 여부는 전적으로 중재위원회의 운영여부에 달려 있다. 그동안의 모든 우려와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재위원회가 최대한 자제력을 갖고 내재적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언론의 숨통을 옥죄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입법을 했다고 믿는(또는 의심하는) 언론사와 그 종사자, 그리고 수용자들에게 적어도 그들이 ‘숨 쉴 공간’이 더 좁아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줄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예컨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는 반발을 샀던 고충처리인제도(\$6)의 경우 범문 그대로 각 언론사가 ‘자율적 활동’을 하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부과(\$34)도 가능한 자제되어야 한다. 진정한 표현의 자유는 정부의 어떤 간섭과 통제도 없는 곳에서만 피어나는 ‘까다로운 꽃’이라는 사실은 수백년 역사가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같은 맥락에서 언론중재위원

(§7) 중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공무원(현직 법관)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재직기간 중'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당연직 위원의 법적 성격상 이는 논리필연적이다. 셋째, 현재 결원의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부의 관여를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중재위원장이 중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으로 하되, 잔여임기에 한하여야 한다. 입법의 흠결이나 미비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중재위원회의 독립성이 발휘되도록 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추후보도에 대한 중재와 조정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18), 이는 무료로 운용하여야 한다. 방송발전기금을 운용자금으로 하면서 국가보조금까지 받는 중재위원회가 피해자를 구제한다고 하면서 수수료까지 징수한다면 이는 입법목적에도 배치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가장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시정권고의 경우도 역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더욱이 모법에는 전혀 근거조항이 없는 시정권고위원회의 구성과 시정권고의 심의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세부절차를 다시 중재위원회의 규칙에 위임하는 것(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그 자체로서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언론에 의한 피해배상(§18)도 조정과 중재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그쳐야 한다. 명예훼손의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기 때문이다.

언론의 원초적인 특성도 그러하지만, 특히 정보화사회에서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역할이 최소한에 그칠 때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비로소 신장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언론단체

새롭게 기준과 판례 만들어가야 할 인터넷신문

백 병 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전문위원

언론법이 바뀌면서 인터넷신문들도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신문법에 따라 '인터넷신문'이라는 정기간행물로 인정받게 됐으며 개정 언론중재법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대상에도 포함되게 됐다. 당연한 일이지만 언론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함께 법적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 셈이다.

인터넷신문은 법적 지위를 얻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새로운 미디어로서 현실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인터넷 언론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언론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만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언론사를 일일이 유형화해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 법제 시스템이 '매스 미디어'라는 기존의 언론 개념을 뿌리부터 뒤엎은 인터넷 언론을 정의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결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

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어디까지를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는 개념을 전혀 달리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

인터넷신문이 새롭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서 이에 따라 언론중재제도나 피해구제 방안 등을 놓고도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인터넷신문은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와 피해구제에서도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그 대상을 어느 선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중재나 피해구제법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신문의 범위는 신문법과 그 시행령으로 규정된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 콘텐츠의 어디까지를 중재나 피해구제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인터넷신문의 특징 중 하나는 참여저널리즘이다.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이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하는 일방적 매체였다면 인터넷신문은 기사와 독자 반응이 동시에 게재되는 쌍방향성을 갖는다. 어떤 경우에는 기사보다는 독자 참여 글이 더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같은 매체 특성 때문에 독자 참여 글 등에 대한 중재나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가 된다. 독자 참여 글을 게재한 인터넷 신문사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겠지만 독립된 법률적 주체로서 독자 개인의 글에 대한 정정이나 반론, 혹은 삭제 권한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법리 논쟁이 예상된다.

몇 년 전 일본 법원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한 비방 글에 대한 명예훼손 신청을 기각한 적이 있다. 피해자가 얼마든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기각 사유였다. 말하자면 독자 참여 글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청구 자체가 가능한지 그 자체부터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결이다.

인터넷은 신문과 같은 활자매체의 성격을 갖는 한편 즉시성에 있어서는 방송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방송과 같은 리얼타임의 매체이자 보관과 기록이 가능한 신문 매체의 특성을 겸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반론이나 정정보도문 게재 방식과 관련해서도 색다른 고민거리가 발생한다. 반론 보도문은 어디에 어떻게 실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에서부터 정정보도를 할 경우 기존의 기사는 아예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 밖에도 포털 사이트에 중계한 기사에 대한 반론이나 정정 보도 문제를 비롯해 무수한 새로운 쟁점들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인터넷신문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에 대응한 전담 중재팀과 연구팀의 운영이 필요하다. 직권 중재 등 그 권한이 대폭 강화된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일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중재 및 피해구제 노력과 함께 인터넷신문 등 새롭게 등장하는 뉴미디어의 환경에 대비한 법제적 연구와 정비가 요구된다.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언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